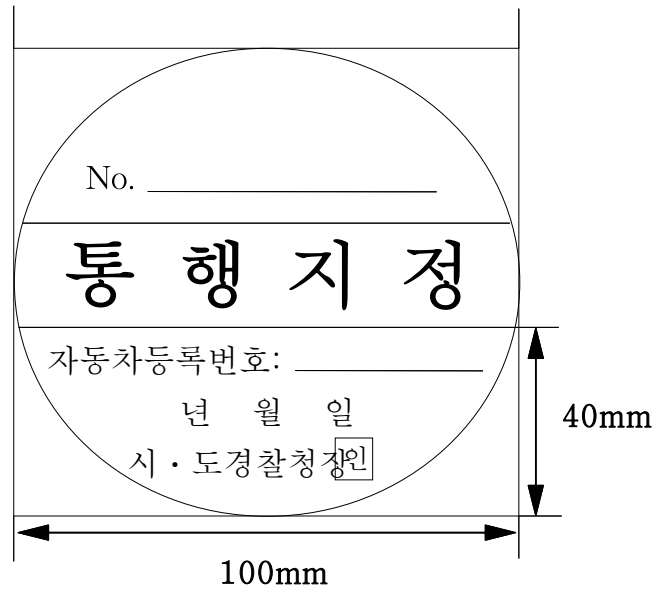


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표 10] <개정 2020. 12. 31.>

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(제18조제1항관련)



(주)

1. 바탕색은 노랑색으로 하되 통행지정란은 백색으로 한다.
2. 글씨는 "통행지정"은 청색으로 하고, 기타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.
3. 통행지정증은 앞면유리 우측상단, 뒷면유리 좌측하단, 좌·우측 중앙창유리 중앙상단에 부착한다.